

2024년 바이오 혁신성장기업 유공 표창 계획 공고

1. 포상 개요

□ 목 적

- 국내 바이오산업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바이오 분야 우수기업의 공로를 치하하여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의욕을 배양하고 경영인들의 자긍심 고취와 더불어 바이오분야 산업계의 사기진작을 도모

□ 기본방향

- 기술혁신 및 경영성과를 통한 국가경제산업발전 및 글로벌시장 진출, 일자리창출 등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기업을 적극 발굴·추천
- 기술집약적이고 창업이 활발한 바이오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스타트업과 중소기업·중견·대기업의 두 부문으로 나누어 후보기업을 고르게 발굴

□ 대 상

- 바이오산업 분류 코드(KS J 1009)에 따른 8개* 업종
 - * 바이오의약산업, 바이오화학·에너지산업, 바이오식품산업, 바이오환경산업, 바이오의료기기산업, 바이오장비 및 기기산업, 바이오자원산업, 바이오서비스산업
 - * (참고) <https://www.kbiois.or.kr/portal/intro/categoryInfoPage.do>
- 포상 분야별 자격요건

시상부문	신청대상	포상요건
스타트업	벤처기업인증 득한 바이오분야 창업 7년 이내 기업	- 바이오산업 기술혁신에 탁월한 성과(R&D 활성화, 특히 확대 등)를 달성하여 타에 모범이 되는 기업 -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에 탁월한 성과(매출증대, 투자유치, 수출활성화 등)를 달성하여 타에 모범이 되는 기업
중소·중견 ·대기업	바이오분야 중소·중견·대기업	- 기업의 경영활동 및 기술개발을 통하여 기타 경제 산업 발전효과를 유발하고 이로 인한 고용확대에 공헌한 기업

□ 시상계획

- 시상일자 : 2024. 11. 28(목) 바이오산업의 날(예정)
- 시상방식 : 스타트업, 중소·중견·대기업 2개 부문을 각각 선정하여 시상

□ 시상내용

시상명	시상부문	시상규모(예정)	
바이오 혁신성장기업	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	스타트업	5점
		중소·중견·대기업	
	한국바이오협회장상	스타트업	2점
		중소·중견·대기업	

* 신청접수 결과를 바탕으로 부문별 표창점수가 결정되며, 최종 심사결과에 따라 시상규모 변동 가능

2. 신청 자격

□ 기본요건

- 표창추천일 기준 해당 분야 공적기간이 최소 3년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
- 상훈법령(정부포상업무지침 포함)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처리지침 준용

□ 추천제한

- 표창추천일 기준, 최근 2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
-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
-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(민간단체에만 적용)
 - * 다만,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
-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(민간단체에만 적용)
 -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)
 - *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(동일사건번호)는 1회로 처리

-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)

- *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

○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“의견거절”, “부적정”, “한정”인 상장회사

○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법인(단체)

- * 다만,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

○ 「근로기준법」 등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(단체)

-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「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」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

-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「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」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

- *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

○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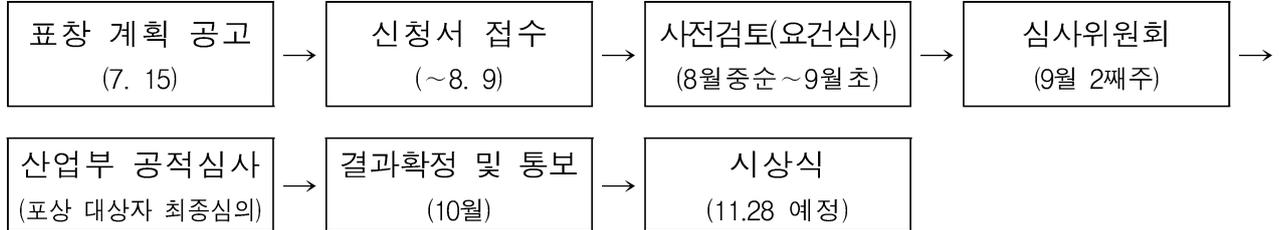
○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

□ 기타 유의사항

- 추천제한자 등 표창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표창을 받거나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, 공적조서의 공적사항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,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취소될 수 있음

3. 선정절차 및 심사기준

□ 선정절차



- * 사전검토 : 접수문건 확인 및 부도, 휴·폐업, 회계현황 등 요건 부적절 사항 검토
- *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□ 심사기준

심사항목	세부 내용
기술/제품 우수성	• 개발기술/제품의 기술경쟁력 및 산업적 파급력 등
글로벌 진출	• 신시장 창출을 위한 해외 진출 활동 성과 • 국내·외 외부기관과의 우수협력 사례
사업화	• 국내·외 기술이전 성과 및 경제적 효과 등
파급 효과	• 최근 3년간 특허 출원·등록 건수 • 최근 3개년 수출증가율 • 최근 3개년 투자유치 성과 (스타트업 부문만 해당) • 고용 창출, 사회공헌 등 국내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정도
경영 성과	• 최근 3개년 종업원 증가율 • 최근 3개년 매출성장률 • 최근 3개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비율 평균값

4. 관련 서류제출

□ 신청서 제출

- 관련양식 : 2024년 바이오 혁신성장기업 유공 표창 신청서
- 접수처 : 한국바이오협회 산업지원본부 산업육성팀
- 접수방법 : 온라인 신청페이지를 통해 접수(<https://forms.gle/Be8JsYtwKzNjCnc26>)
- 접수기한 : 2024년 8월 9일(금) 오후 3시까지(접수마감일기준)

○ 제출 유의사항

- 신청서 등 제출서류는 ①한글파일 (hwp) 및 ②스캔파일 (PDF) 2종류 모두 제출
- 온라인 신청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서 및 증빙자료 등을 압축하여 업로드 (첨부파일의 최대용량은 1GB로 초과시 업로드 불가)
- 파일명은 '2024바이오혁신성장기업(신청부문)-기관명'으로 압축 저장하여 제출
-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공적심사결과는 별도 개별 통지함

○ 문의처 : 한국바이오협회 산업지원본부 산업육성팀 담당자

(Tel) 031-628-0036 (E-mail) shkim@koreabio.org

□ 제출서류

제출서류		작성양식	비고
1	표창 신청서	서식 제1호	한글파일과 스캔파일 모두 제출
2	공적조서	서식 제2호	한글파일과 스캔파일 모두 제출
3	대표자 이력서(반명함사진.jpg 별도 제출)	서식 제3호	한글파일과 스캔파일 모두 제출
4	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	서식 제4호	스캔파일 제출
5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		스캔파일 제출
6	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	-	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
7	고용·산재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		최근 3개년 연말 기준
8	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감사보고서	-	최근 3개년 연말 기준
9	기타 공적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	-	증빙이 있는 경우만 공적으로 인정

※ 자세한 사항은 [붙임2] 2024년 바이오 혁신성장기업 유공 포상 신청서의 제출서류 checklist 참조

□ 유의사항

- 포상 대상자 추천 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, 객관적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하고, 기타 추천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
- 포상 대상자에게는 범죄경력조회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고, 인적 사항과 주요공적이 공개됨을 사전에 동의